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정진철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79호

다. 제출일자 : 2018. 10. 17.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2. 제안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11.1.~11.8.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보행정책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¹⁾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을 말함²⁾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이³⁾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제1호 및 제7호(2015.8.3.일 폐지)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역사 1동선 지하철 역사 확충, 저상버스 도입 및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사업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